



<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②4>

노동개혁 선진화 4대 법안이란 무엇인가?

- 노동개혁 4대 법안이란 2015. 9.15 노사정대타협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발의했던 5개 법안 가운데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외한 「근로기준법», 「고용보험법»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»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개정안 등을 말함. 4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【근로기준법】

- 통상임금 개념 : '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'으로 정의, 제외금품(개인적 사정, 업적,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·금액이 달라지는 금품)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
- 근로시간 단축 :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,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행, 노사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(일몰시킨 2023년)
-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%, 8시간 초과시 100%로 명시
-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(취업규칙 : 2주→1개월, 노사합의 : 3개월→6개월 * 2024년부터 시행)
-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(26개→10개)
-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(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외에 유급휴가도 적립 가능, 선 휴가·후 근로도 허용)

【고용보험법】

-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: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%→ 60%, 지급기간을 90~240일→ 120~270일로 확대.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는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
-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: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(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→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)하고,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%→ 80%로 조정.

- 실업인정 강화 및 반복수급 제재 : 90일 이상 미취업자,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실업인정 주기 단축,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거부 시 구직급여 최고 30% 감액
- 훈련연장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, 조기재취업수당 폐지

【산재보험법】

-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
 - 단계적 시행(2017년 도보·대중교통, 2020년 자동차)
 - 근로자 종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(예: 장해·유족급여 등) 제한
 -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배제
 -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 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

【파견근로자법】

- 생명·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을 제한
 -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·도선 선원 업무, 철도종사자 업무, 산업안전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 업무 추가
- 고령자,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
 -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(55세 이상) 파견 허용
 - 전문직¹⁾에 종사하는 고소득자²⁾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파견 허용
 - ¹⁾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(관리자) 및 대분류 2(전문가) 종사자
 - ²⁾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%(2015년 5600만원)
- 뿌리산업(금형, 주조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6개 업종)에 대한 파견 허용
- 파견계약서상에 직접인건비, 간접인건비, 일반관리비,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 근로자 파견대가 내역 명시